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회)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광제도를 개편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기업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광권 허가시 붙이는 부담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요건 및 기준 명확화 (제7조의2, 별표3 신설)

원상회복충당금, 특별수당 등 부담의 종류에 대해 정의하고 각 부담의 요건과 기준 신설

나. 조광료 부과기준 변경 및 용어 개정 (제8조 제1항 별표2, 제8조 제3항 개정)

- 생산량 기반에서 비율계수에 근거하여 조광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매출액, 총비용, 비율계수, 조광료 부과율 및 산정방법 정의

다. 조광료 납부시기 변경 및 연기,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 신설

(제9조 제1~3항 개정, 제9조 제4~5항 신설)

- 조광료 납부시기를 분기납에서 연납으로 변경
- 해저조광권자가 대수선,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가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10. 4. ~ 1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조건부 허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탐사권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 다음 각 호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1. 원상회복충당금

2. 특별수당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의 요건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의 제목 “(조광료의 부과기준)”을 “(조광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하고, 제3항의 “제2항의 조광료를 부과할 판매가액의 범위 및”을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 등 조광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로 한다.

제9조 제1항의 “매분기”를 “매연도”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조광료의 납부시기는 매분기 종료후 60일까지로 한다”를 “해저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조광료 부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의 조광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의 “조광권자”를 “해저조광권자”로 하고, “당해분기의 조광료”를 “조광료”로 한다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광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저조광권자의 신청을 받아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조광료를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광료 납부의 절차와 조광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조광료의 부과기준(제8조 제1항 관련)	
1. 매출액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구에서 생산한 원유, 천연가스 등을 판매한 금액으로서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값
2. 총비용	해저조광권자의 해저광물 탐사·채취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 비용의 합
가. 자본화 비용	해저광물 탐사·채취를 위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비용
나. 운영 비용	해저광물의 탐사·채취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발생한 총비용(감가상각비 및 제세금은 제외)
다. 원상회복 비용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의 수거 기타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비용(원상회복 충당금 포함)
3. 비율계수	부과대상 연도까지의 누적 순매출액(누적 총매출액에서 누적 조광료를 차감한 값)을 누적 총비용으로 나눈 값
4. 조광료 부과요율	조광료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비율계수	부과요율(%)
1.25 미만	1
1.25 이상 ~3 미만	{18.28 × (비율계수 - 1.25)} + 1
3이상	33

5. 조광료 산정방법

조광료는 부과대상 연도의 매출액에 조광료 부과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특별조광료

가. 납부요건 : 부과대상 연도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 평균 판매가격이 직전 5개연도 평균판매가격 대비 20% 이상이고, 부과대상 연도의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미화 \$85 이상인 경우(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저조광권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산정방법:{부과대상 연도의 평균 판매가격 - (직전 5개연도 평균 판매가격 ×1.2)} × 판매물량 × 부과요율(33%)

서명특별수당 : 해저광업권자와 해저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계약에 서명하였을 때

발견특별수당 :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발견하였을 때

생산특별수당 :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누적생산량이 해저조광권설정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비고]

1. 원상회복 충당금은 어느 경우에도 반환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적립 방법은 해저조광권설정계약에서 정한다.

2. 특별수당의 부담여부 및 액수는 해저조광권설정계약에서 정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부담의 요건 및 기준(제7조의2 관련)

1. 원상회복 충당금

가. 납부요건 및 기간 :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해저조광권 설정계약에서 정한 최초 신고매장량의 50%를 초과한 때부터 채취권의 존속기간 종료시까지

나. 산정방법 : (직전연도 총생산량 / 직전연도 말 매장량) × 잔여 원상회복비용

2. 특별수당

가. 종류 : 서명특별수당, 발견특별수당 및 생산특별수당

나. 납부요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조건부 허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탐사권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 다음 각 호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1. 원상회복충당금 2. 특별수당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의 요건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①·② (생략)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광료를 부과할 판매가액의 범위 및 조광료의 현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에 따른 판매가격 등 조광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 ----- -----.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①해저 조광권자는 조광료를 매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 ----- --- 매연도----- -----

② 제1항의 조광료의 납부시기는
매분기 종료후 60일까지로 한다

③ 조광권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조광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이자= 당해분기의 조광료×25/
100×연체일수/365

신설

② 해저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으로부터 조광료 부과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
1항의 조광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저조광권자가 -----

연체이자= 조광료×25/100×연체
일수/36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조
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광료 전액
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저조광권자의 신청을
받아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조
의3 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

를 제공하게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
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
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조광료를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
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광료 납부의 절차와 조광료 납
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5241